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6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윤영석 · 이달희
서명옥 · 나경원 · 김은혜
김정재 · 곽규택 · 송언석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,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.

이에 국민의 기부금,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, 기금을 국채·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,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·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

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의2 신설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2조의2(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) ①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한다.

②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(단체를 포함한다)이 기부하는 기부금
2.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령 대상인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

③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
2. 국가보증채무의 이행
3. 그 밖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④ 국가채무감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

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에 기부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위한 기부금 접수 현황을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때에는 기부자의 이름, 소속 등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.
-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2조의2(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)</u> ①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한다. ②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(단체를 포함한다)이 기부하는 기부금 2.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령 대상인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③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1.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2. 국가보증채무의 이행

3. 그 밖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④ 국가채무감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에 기부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위한 기부금 접수현황을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때에는 기부자의 이름, 소속 등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.

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